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 정신적 장애 등을 지닌 선거인에 대한 투표보조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54호)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8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김 예지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I .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정신적 장애 등을 지닌 선거인에 대한 투표보조	3

[김예지의원안], [박주민의원안]

I. 제안경위

1. 김예지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30.

다. 회 부 일 : 2024. 10. 2.

2. 박주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예지의원안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2. 박주민의원안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신체의 장애-----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한다)-----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 ----- ----- -----.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2)에 따라 선거권을 가짐. 이는 모든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무원을 선출할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이는 헌법 차원의 요청임과 동시에 현행법³⁾ 및 「장애인차별금지

2)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⁴⁾ 등 개별법률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각장애나 신체장애를 지닌 선거인 등에 대해서만 투표보조인을 두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를 지닌 선거인 등은 투표보조인을 둘 수 없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⁵⁾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투표보조의 가능 여부는 투표장에서 장애 등록 여부, 청각·발달 등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또는 동행인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설명하는

3)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5) 투표 보조, 발달장애인은 안 된다? [서초동M본부](MBC, 2024. 10. 16.)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700_36438.html

경우 투표관리관이 이를 적극 고려하여 투표 보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함.⁶⁾

이와 관련하여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 선거인들이 제기한 2023가합52091 차별구제청구 등 사건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선거인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음(2024. 10. 10.).⁷⁾

이에, 개정안들은 신체적 장애 외에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기표소에 투표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라는 요인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의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봄.

다만, 정신적 장애는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보다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지가

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매뉴얼(투표보조 관련 내용 발췌)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사건에 대해 2025년 1월 8일 항소하였다고 밝힘.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⁸⁾

또한, 설사 외부에 드러나더라도 곤란함의 정도(현저한지 여부)는 선거인 개개인과 투표관리관 등 투표소 내의 인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관성있고 공정한 선거사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개정안들의 입법화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과 함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신적 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해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대리투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현행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대법원이 해당 선거인을 시력상실 등 시각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형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으로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①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②시지각 협응능력(눈의 시각정보와 손의 운동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능력) 저하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보조인의 동행을 인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3
